경산 하양지구 A-5BL 우미린 에코포레 임차인모집공고 (공공지원민간임대)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지구 A-5BL

▌공급대상 : 60~85㎡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787호

▌시 행 사 :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 공 사 : 우미건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관 운영 안내

- 경산 하양지구 A-5BL 우미린 에코포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홍보관 관람을 사이버모델하우스(gh2.lynn.co.kr)와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홍보관 방문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며, 일일/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사이버모델하우스(gh2.lynn.co.kr)에서 예약하신 분께 홍보관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사전 예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고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임을 양지하시고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병행 오픈에 따른 고객 상담을 분양 상담전화(053-857-7870)등을 통해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담 문의 집중 등으로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홍보관 입장이 가능하오니, 방문 가능 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하여 당첨자 외 동반 1인에 한해 입장이 제한됩니다.(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홍보관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홍보관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본 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에 의거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방식을 준용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할 경우 퇴거요인(기존 주거주택 포함)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고, 계약자관리, 시설관리, 임대관리(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등은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합니다.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차인 모집공고일은 **2022.08.19.**이며, 이는 최초 청약자격조건(청약신청자 나이, 국적 등)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 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합니다.**(청약홈 접수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기능이 별도 없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서류 검증 시 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추후 미계약호실 발생 시 임차인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단, 지자체 및 승인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용대상, 자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이면서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1세대 1주택기준으로 공급합니다.
 가. 일반공급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나. 특별공급 대상자
 ① 청년 : 만 19세 이상이면서 만 39세 이하인 무주택자로서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②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③ 청년 셰어형 : 상기 ①항의 청년 조건을 충족하는 자이면서, 1실 1인 거주 대상자
-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와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무주택자"란, 청약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임차인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모집공고일(2022.08.19)**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특별공급 청년형은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계약일 이후 필요 시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 비고 3)에 따라 임대차계약 갱신 또는 재계약 체결 시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요건 및 청년, 고령자 특별공급의 연령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소득요건의 경우 자격 요건상의 기준을 30퍼센트포인트 초과하여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갱신 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홍보관 개관은 **2022.08.19.(금) 10:00 부터이며**, 공급안내문 등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이 주택의 특별공급(청년/신혼) 및 일반공급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할 수 있으며, 당사 홍보관에 방문하신 경우 청약신청 안내 및 도움을 드립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청약신청, 전산추점 및 동호수(실)배정은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에서 진행합니다.
- 전화상담 및 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임차인 모집공고문 및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차인 모집공고문 등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특별공급(청년 셰어형 제외) 및 일반공급의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합니다.**
- 일반공급은 총세대수에서 특별공급(298세대)을 제외하고 공급될 예정이며, 특별공급 접수 미달 시 발생하는 세대 수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향후 특별공급 예비임차인에게 공급하되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7에 따라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및 입주자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향후 사업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를 경우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이 공고문은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임차인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입주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사업주체는 임차권을 박탈하고 기 납부한 **계약금 중 200만원은** 위약금으로 공제되며(계약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입주 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가 양도 및 전대확인, 건물점검, 수리를 위해 전유부분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이 주택은 각 공급유형(특별/일반)과 타입에 관계없이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청약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대주택의 명도 및 퇴거 기준

•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는 경우

• 다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임차인(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을 포함하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4조의 7에 따라 주택소유 기준 완화되어 모집한 임차인은 제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안내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청약신청</th><th colspan="2">당첨자발표</th><th colspan="2">당첨자 서류검수</th><th rowspan="2">계약체결</th></tr>
<tr><th>특별공급
(청년 셰어형)</th><th>특별공급(청년/신혼) 및
일반공급</th><th>특별공급
(청년 셰어형)</th><th>특별공급
(청년/신혼),
일반공급</th><th>특별공급
(청년셰어형)</th><th>특별공급
(청년/신혼),
일반공급</th></tr>
<tr><td>일정</td><td>2022.08.24.(수)</td><td>2022.08.24.(수) ~ 08.25.(목)</td><td>2022.08.25.(목)</td><td>2022.08.30.(화)</td><td>2022.08.26.(금) ~
08.28.(일)</td><td>2022.09.01.(목) ~
09.07.(수)</td><td>2022.09.16.(금) ~
2022.09.20.(화)</td></tr>
<tr><td>방법</td><td>인터넷청약
(10:00~16:00)</td><td>인터넷청약
(09:00~17:30)</td><td>개별조회
(당사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td><td colspan="2">방문접수
(10:00~16:00)</td><td>방문계약
(10:00~16:00)</td></tr>
<tr><td>장소</td><td>■ 사업주체 홈페이지
(gh2.lynn.co.kr)</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td><td>■ 사업주체 홈페이지
(gh2.lynn.co.kr)</td><td>■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td><td colspan="2">■ 주택 홍보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5로 15, 101호)</td><td>■ 주택 홍보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5로 15, 101호)</td></tr>
</table>

1. 주택공급내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청 건축과 – 33203호(2022.08.18.)로 임차인모집공고 신고 변경 수리

■ 공급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지구 A5BL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 지상 최고 22~35층 5개동, 총 787세대(특별공급 298세대 중 셰어형 408실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타입	세대별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특별공급			일반공급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청년	청년 셰어형	신혼			
2022850015	79A	79.9202	24.0708	103.9910	38.6130	142.6040	-	-	-	99	99	2022년 12월
	79B	79.9202	24.0708	103.9910	38.6130	142.6040	-	-	35	-	35	
	79C	79.7267	24.0124	103.7391	38.5195	142.2586	-	53(159실)	-	-	53(159실)	
	79D	79.7873	24.0307	103.8180	38.5487	142.3667	-	42(168실)	-	-	42(168실)	
	79E	79.8488	24.0492	103.8980	38.5784	142.4764	1	-	-	-	1	
	79F	79.4539	23.9303	103.3842	38.3876	141.7718	1	-	-	-	1	
	79G	79.4442	23.9273	103.3715	38.3830	141.7545	1	-	-	-	1	
	79H	79.5306	23.9533	103.4839	38.4247	141.9086	1	-	-	-	1	
	84A	84.8722	25.5621	110.4343	41.0054	151.4397	-	-	-	295	295	
	84B	84.7016	25.5110	110.2126	40.9233	151.1359	-	-	-	95	95	
	84C	84.8722	25.5621	110.4343	41.0054	151.4397	-	-	35	-	35	
	84D	84.7016	25.5110	110.2126	40.9233	151.1359	-	-	33	-	33	
	84E	84.8864	25.5667	110.4531	41.0126	151.4657	-	-	35	-	35	
	84F	84.7755	25.5332	110.3087	40.9591	151.2678	-	-	34	-	34	
	84G	84.7204	25.5167	110.2371	40.9324	151.1695	-	27(81실)	-	-	27(81실)	
합 계		-	-	-	-	-	**4**	**122(408실)**	**172**	**489**	**787(408실)**	

■ 셰어형 실별 면적

타입	공급대상	침실별 전용면적(㎡)				
		안 방	침 실1	침 실2	침 실3	침 실4
79C	청년 셰어형	24.8327	9.5900	9.5900	-	-
79D		-	8.9775	8.9775	10.0575	9.2925
84G		24.9271	10.2750	10.2750	-	-

※ 상기 실별 전용면적은 공부상 면적 기준으로 산출(안방 전용면적에는 발코니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셰어형(79C/79D/84G) 청약은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를 통해 진행 할 예정이며, 임차인선정 및 호실배정은 사업주체가 정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셰어형 청약신청 시, 타입만 선택이 가능하며, 임차인의 성별을 감안하여 동·호수(실), 층수, 라인 등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안방, 침실의 임차인은 추첨프로그램에 의해 임의배정되며, 배정된 셰어형 안방, 침실 호실보다 청약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비임차인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 [입주 후] 공동생활 및 공동거주하는 인원중 퇴거 인원이 발생 할 경우, 임대인(사업주체)는 잔여 실에 대하여 임의 배정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특별공급(청년셰어형 제외) 주택형(79A/79B/79E/79F/79G/79H/84A/84B/84C/84D/84E/84F)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임차인 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추첨의 방식으로 당첨자(예비임차인)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주택 타입 (79A/79B), (84A/84C), (84B/84D)는 공급 유형(일반/특별)을 나누기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에 적용되는 주택 타입 명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표기된 타입 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 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 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임을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79E, 79F, 79G, 79H는 복층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1층은 상층부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및 계약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주거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단, 영유아 가정 어린이집 운영 목적에 한해 사업주체의 승인을 득한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당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 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이며, 임차인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임대차계약 신고 및 변경 법적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 14조의3 [별표1] 규정에 의거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산시 6개월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합니다.(청약홈 접수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기능이 별도 없으므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추후 서류 검증 시 경산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 아닐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추후 미계약호실 발생 시 임차인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모집할 예정입니다.(단, 지자체 및 승인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적용대상, 자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 표기안내

타입	79A	79B	79C	79D	79E	79F	79G	79H	84A	84C	84B	84D	84E	84F	84G
공급유형	일반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특별공급
공고상 전용면적(㎡)	**79.9202**		**79.7267**	**79.7873**	**79.8488**	**79.4539**	**79.4442**	**79.5306**	**84.8722**		**84.7016**		**84.8864**	**84.7755**	**84.7204**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기타 안내 및 홍보관 및 공급안내문 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청년/신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세대, 천원)

타입	공급 유형	층구분	공급 세대수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79B	특별공급 (신혼)	1~5층	5	102,000	12,000	90,000	79	65,000	8,000	57,000	167	27,000	4,000	23,000	257
		6층이상	30	102,000	12,000	90,000	94	65,000	8,000	57,000	182	27,000	4,000	23,000	272
79E	특별공급 (청년)	1층	1	102,000	12,000	90,000	92	65,000	8,000	57,000	180	27,000	4,000	23,000	270
79F	특별공급 (청년)		1	102,000	12,000	90,000	92	65,000	8,000	57,000	180	27,000	4,000	23,000	270
79G	특별공급 (청년)		1	102,000	12,000	90,000	92	65,000	8,000	57,000	180	27,000	4,000	23,000	270
79H	특별공급 (청년)		1	102,000	12,000	90,000	92	65,000	8,000	57,000	180	27,000	4,000	23,000	270
84C	특별공급 (신혼)	1~5층	5	108,000	12,000	96,000	80	69,000	8,000	61,000	173	29,000	4,000	25,000	268
		6층이상	30	108,000	12,000	96,000	97	69,000	8,000	61,000	190	29,000	4,000	25,000	285
84D	특별공급 (신혼)	1~5층	3	108,000	12,000	96,000	80	69,000	8,000	61,000	173	29,000	4,000	25,000	268
		6층이상	30	108,000	12,000	96,000	97	69,000	8,000	61,000	190	29,000	4,000	25,000	285
84E	특별공급 (신혼)	1~5층	5	108,000	12,000	96,000	80	69,000	8,000	61,000	173	29,000	4,000	25,000	268
		6층이상	30	108,000	12,000	96,000	97	69,000	8,000	61,000	190	29,000	4,000	25,000	285
84F	특별공급 (신혼)	1~5층	4	108,000	12,000	96,000	80	69,000	8,000	61,000	173	29,000	4,000	25,000	268
		6층이상	30	108,000	12,000	96,000	97	69,000	8,000	61,000	190	29,000	4,000	25,000	285

■ 특별공급(청년 셰어형)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세대, 천원)

타입	공급 유형	층구분	공급 세대수 (실수)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79C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1~ 최상층	안방 (53실)	57,600	6,000	51,600	52	36,600	4,000	32,600	102	15,200	2,000	13,200	152	300	292
			침실1 (53실)	22,200	3,000	19,200	20	14,200	2,000	12,200	39	5,900	2,000	3,900	59	120	113
			침실2 (53실)	22,200	3,000	19,200	20	14,200	2,000	12,200	39	5,900	2,000	3,900	59	120	113
79D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1~ 최상층	침실1 (42실)	24,500	3,000	21,500	22	15,600	2,000	13,600	43	6,500	2,000	4,500	65	130	124
			침실2 (42실)	24,500	3,000	21,500	22	15,600	2,000	13,600	43	6,500	2,000	4,500	65	130	124
			침실3 (42실)	27,600	3,000	24,600	25	17,600	2,000	15,600	49	7,300	2,000	5,300	73	140	140
			침실4 (42실)	25,400	3,000	22,400	23	16,200	2,000	14,200	45	6,700	2,000	4,700	67	130	129
84G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1~ 최상층	안방 (27실)	59,200	6,000	53,200	53	37,800	4,000	33,800	104	15,800	2,000	13,800	157	300	300
			침실1 (27실)	24,400	3,000	21,400	21	15,600	2,000	13,600	42	6,600	2,000	4,600	63	130	123
			침실2 (27실)	24,400	3,000	21,400	21	15,600	2,000	13,600	42	6,600	2,000	4,600	63	130	123

■ 일반공급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세대, 천원)

타입	공급 유형	층구분	공급 세대수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보증금			월 임대료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총액	계약금	잔금	
79A	일반공급	1~5층	15	121,000	13,000	108,000	83	90,000	10,000	80,000	157	54,000	6,000	48,000	242
		6층이상	84	121,000	13,000	108,000	97	90,000	10,000	80,000	171	54,000	6,000	48,000	256
84A	일반공급	1~5층	43	127,600	13,000	114,600	86	95,000	10,000	85,000	163	57,000	6,000	51,000	254
		6층이상	252	127,600	13,000	114,600	100	95,000	10,000	85,000	177	57,000	6,000	51,000	268
84B	일반공급	1~5층	11	127,600	13,000	114,600	86	95,000	10,000	85,000	163	57,000	6,000	51,000	254
		6층이상	84	127,600	13,000	114,600	100	95,000	10,000	85,000	177	57,000	6,000	51,000	268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 단, 2년 단위 계약갱신에 따라 2년분의 누적상승율(인상분)은 계약 갱신 시에 일괄반영하며, 계약기간동안에는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임대조건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이 있으므로 청약전 임대조건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미납임대료, 관리비 등 제반 납부금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연체료, 위약금, 불법거주에 따른 배상금, 손해배상금, 대출금에 대한 잔액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 등 선순위 자에게 반환할 채권 등을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 79C(청년 3인셰어)는 세대당 3인이 입주하며, 세대 출입문, 현관수납장, 욕실1, 펜트리, 거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79D(청년 4인셰어)는 세대당 4인이 입주하며, 세대 출입문, 현관수납장, 욕실1, 욕실2, 거실, 주방, 멀티룸, 다용도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84G(청년 3인셰어)는 세대당 3인이 입주하며, 세대 출입문, 현관수납장, 욕실1, 펜트리, 거실,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입니다.
- 79C(안방형)은 안방,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2, 안방발코니를 전용으로 사용하며, 79C(침실형)은 침실1, 침실2를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 84G(안방형)은 안방, 드레스룸, 욕실2, 안방발코니를 전용으로 사용하며, 84G(침실형)은 침실1, 침실2를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 79C(청년 3인셰어), 79D(청년 4인셰어), 84G(청년 3인셰어)의 관리비 및 기타 사용료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제정하여 배포하는 임대주택 셰어하우스 공동생활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 임대조건 선택 안내

- 최초 계약 시 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셰어형限)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주 전 선택한 임대조건(표준형, 선택형1, 선택형2, 선택형3(셰어형限)은 추후 임대차계약 갱신 전까지 변경이 불가하고, 갱신 시점에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서면통지로 변경계약조건을 임차인에게 안내하며,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여부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서면통지 하도록 합니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이 안내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선택형에 따라 납부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공통)

• 최초 임차인모집공고일 (2022.08.19) 현재 청약통장 가입여부 등에 관계없이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국내거소 외국인 및 법인은 청약불가) 이면서 주민등록상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모집안내 (청년, 신혼부부)

<table>
<tr><th colspan="2">모집분야</th><th>선발인원</th><th>자격요건</th><th>선정방법</th></tr>
<tr><td rowspan="2">특별공급</td><td>청년</td><td>4세대</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td><td rowspan="2">•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 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4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td></tr>
<tr><td>신혼부부</td><td>172세대</td><td>•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혼인 중인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면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혼인 : 주택공급신청자의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나. 소득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인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를 말한다)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td></tr>
</table>

• **특별공급 모집안내 (청년 셰어형)**

모집분야		선발인원	자격요건	선정방법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122세대 (408실)	•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무주택자로서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가. 연령 : 19세 이상이면서 39세 이하일 것(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나. 혼인 : 혼인 중이 아닐 것 다. 소득 :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할 것 (1)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라 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주택공급신청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 세대의 실(주택형별 상이)별 1인으로 구성되며 각 주택형별 청약자격이 부여 됨. - 각 주택형별 1인이 청약하되, 동·호수 및 실 배정은 추후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배정할 예정임 -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 청약방법 : 주택형 선택(실 배정은 추후 예정)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에 한하여 배정하며,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전부를 대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요건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1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 - 2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10% 이하 - 3순위: 소득요건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 예비임차인 선정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공급 세대수의 청약 신청이 미달 될 때 청약 신청자 모두를 당첨자로 하며, 청약 신청자가 해당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공급세대수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임차인을 선정하며, 청약접수가 140%를 초과할 경우 예비임차인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 배정 추첨은 당첨자에 대한 서류 검수가 완료된 이후 무작위 추첨 예정이며, 성별에 따른 동호수/층/향/실 분리하여 배정할 계획임. (임차인은 실 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특정 실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음)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2인 중 계약자 1명을 대표자로 정하여 1주택을 신청(청약)하여야함)의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이면서,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및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을 원하시는 세대는 반드시 해당 주택형으로 청약을 신청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셰어형 79C, 79D, 84G타입 입주하고자 하는 청약 신청자는 상기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00%이하	3,212,113원	4,844,370원	6,418,566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110%이하	3,533,324원	5,328,807원	7,060,423원	7,920,890원	8,058,679원	8,557,808원	9,056,936원	9,556,064원
120%이하	3,854,536원	5,813,244원	7,702,279원	8,640,971원	8,791,286원	9,335,790원	9,880,294원	10,424,79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원)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 수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 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 소득은 연간소득 ÷ 근무 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항목)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상의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상 과세 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 증명서상의 근무 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 수로 인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 방법**
- 특별공급의 청약신청, 임차인선정 및 동·호수배정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하며,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의 경우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를 통해 청약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모집안내**

모집분야	내용
일반공급	•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경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내거소 외국인, 법인 청약신청 불가) • 본 주택은 세대 당 1건에 한하여 청약 신청 가능함.(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 •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청약신청은 가능하나 세대당 2건 또는 1인 2건 이상 중복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상기 주택 계약 시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동일하여야 함. ※ 임차인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청약신청자의 나이, 국적,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판단 기준임. •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보유액 등에 관계없이 청약 신청 가능함. 단, 계약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2.08.19.)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기준시점부터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미 충족 시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음.

■ **청약신청금(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타입 (청년 셰어형 제외)	10만원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입출금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대상 : 예비임차인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 청약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구분	환불방법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일 은행영업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환불(※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청약 시 환불 신청 계좌가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인터넷청약 서비스 안내(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이용대상	주택청약 참가은행(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단, 인터넷뱅킹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이용방법	· [PC 청약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접속 → 공공지원민간임대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인증서 로그인 → 주택선택 → 유의사항확인 → 공급유형(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타입 선택 → 청약자격 확인 → 선정기준 입력/확인 → 연락처 등 입력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접속 후 PC청약방법 참조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세대당 1건(세대주 혹은 세대원 중 1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당 2건 이상 혹은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청약 신청하여 당첨 시, 모든 당첨을 취소 처리 합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형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확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추후 무주택 여부 검증 시 무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필요 시 준공 전 또는 임대기간 중에도 임차인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청약홈 인터넷 청약 접수 마감 시간 17시 30분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시 30분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이 2일 이상 진행되더라도 청약신청 취소는 신청당일 17시 30분 이전에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입주자저축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약신청 전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를를 발급 받아야 하며,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신청금(10만원 이상)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 본 임차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임차인 선정방법

- 이 주택은 청약 신청자 전원(청년 셰어형 제외)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예비임차인)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을 실시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예비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 예비 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특별공급 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예비임차인 미계약 주택)은 해당 유형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향후 임차인모집 재공고를 통해 공개추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재공고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 예비임차인이 전부 소진되어 예비임차인이 없을 경우, 일반공급은 입주개시일 이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 홍보관 방문 청약 안내사항**

• 청약 신청자 중 정보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의 경우, 홍보관 방문 시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청약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이고, 아래 일정 및 장소, 구비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신청		신청장소
정보취약계층 (노약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셰어형)	2022.08.24.(수) [10:00 ~ 16:00]	주택 홍보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5로 15, 101호)
	특별공급(청년/신혼) 및 일반공급	2022.08.24.(수) ~ 08.25.(목) [10:00 ~ 16:00]	

■ **구비사항**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구비사항</th></tr>
<tr><td>본인신청 시
(배우자포함)</td><td colspan="2">· 특별공급,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시 청약신청금 필요(주택청약 참가은행에 통장개설 및 청약신청금 예치),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홍보관 방문
※ 홍보관에서는 현금수납 불가하므로 필히 주택청약 참가은행 입출금 통장에 청약신청금(10만원)이 예치돼 있어야 하며, 인증서를 필히 발급하여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배우자 대리 신청 시는 배우자의 신분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확인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등본표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td><th>인감증명 방식</th><th>본인서명확인 방식</th></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재외동포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가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타입 착오기재, 모집공고상 기준과 상이한 다수 청약 등으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홍보관 방문 청약 신청 시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청약신청금 예치 및 공동인증서(또는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KB금융인증서)를 발급 후 인증서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하며, 홍보관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청약홈 신청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제4항)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사항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주택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 구성 예정자까지 포함, 청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 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 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임대사업자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 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 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로부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 하여야 한다.
 8.「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4. 공급일정

■ **청약 및 계약일정**

구 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청약신청금	당첨자 발표	계약일자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2022.08.24.(수) 10:00~16:00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홈페이지 (gh2.lynn.co.kr)	없음(無)	2022.08.25.(목) 17:00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 에코포레 홈페이지 (gh2.lynn.co.kr)	2022.09.16.(금) ~ 2022.09.20.(화) 10:00 ~ 16:00
특별공급 (청년/신혼) 및 일반공급	2022.08.24.(수) ~ 08.25.(목) 09:00~17:30	청약홈(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접수 (www.applyhome.co.kr) * 정보취약계층은 홍보관에서 인터넷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0만원 (청약신청금 10만원 이상, 이체가능 금액 확인 필요)	2022.08.30.(화) 16:00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신청은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청약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착오방지를 위하여 개별서면 통지 및 유선안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 임차인 명단은 당첨자 발표 후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에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계약체결

■ **계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계약체결 장소
구비서류 제출	특별공급 (청년 셰어형)	2022.08.26.(금) 10:00 ~ 2022.08.28.(일) 16:00	주택 홍보관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5로 15 101호
	특별공급 / 일반공급 (청년/신혼)	2022.09.01.(목) 10:00 ~ 2022.09.07.(수) 16:00	
당첨자 계약체결		2022.09.16.(금) 10:00 ~ 2022.09.20.(화) 16:00	

※ 셰어형 당첨자는 구비서류 제출 일정 안에 서류제출을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동·호수 배정에 제외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9]

- 당첨자 계약체결 기간 준수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일반/특별공급)			○		1.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본인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일체 (사전 제출서류 계약 시 대체)
			○		2.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본인	· 주택 홍보관에서 계약금(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3.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임대계약용(본인 발급용)
			○		4.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대리인 신청 불가
			○		5.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6.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포함하여 발급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8.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9. 추가 개별통지 서류	본인	·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10, 무주택서약서	본인	· 당사 홍보관 비치
특별 공급 유형별	공통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
				○	2,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홍보관 비치
				○	3, 임신증명서류 및 출산이행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출산이행각서(홍보관 비치)
	청년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3. 사실증명원	본인	· 소득이 없는 세대원
				○	4.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청년 셰어형			○	1. 본인 및 세대원 소득 관련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	2. 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	직계존속	·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
				○	3. 사실증명원	본인	· 소득이 없는 세대원
				○	4.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 "상세"로 발급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신혼 부부	혼인상태	○		1. 혼인 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서, "상세"로 발급
			○		2. 소득확인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
		혼인예정	○		1. 결혼 확인서류	본인	· 서약서(주택홍보관 비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
			○		2.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예비 배우자	·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상세"발급
			○		3. 소득 관련 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관련서류 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1.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_청약자 기준
			○		2. 위임장	-	· 주택홍보관 비치,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
			○		3.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 시 구비서류)는 임차인모집공고일(2022.08.1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주택홍보관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획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주택홍보관 비치)	·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임대보증금(계약금, 잔금) 납부

구 분	금융기관명	납부 계좌	예금주	비고
임대보증금	KB국민은행	476101-01-421523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상기 계좌는 임대보증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임대보증금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계약자별로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됩니다.)

- 무통장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101-902)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당사 홍보관에서는 대금을 수납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 체결 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영수증은 계약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체이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라도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임대료 납부

- 월 임대료 납부계좌는 입주 전 별도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6. 유의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의 약 45일전 2일 이상 입주자(임차인대상으로)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기간은 추후 별도 고지 예정입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 2022년 12월(예정)

- 입주지정기간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될 시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중 실제 입주일 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 미납부시 열쇠불출 및 입주가 불가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세대 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 2개소,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아이돌봄방, 주민운동시설 1개소, 경비실 2개소, 피트니스, 체육관 등

■ **임대보증금 보호 관련 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거 임대보증금보증의 대상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에 의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우선 가입하고, "임차인"은 보증수수료의 100분의 25를 "임대인"이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주요내용**

- 보증채무의 내용(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와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임대보증금계약 포함, 이하 같음)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신고증명서 발급일, 이하 같음) 이후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라 공급촉진지구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회사의 이행방법 결정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되돌려 주거나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이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주채무자와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이나 같은 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 또는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 이전에 그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 민간임대주택법 제42조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최초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 신고증명서】 공급신고대상 임대주택사업에서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를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12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증명서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및 고시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임대이행】 보증사고 시 해당 주택의 임대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하여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임대보증금 등의 납부(약관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차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는 보증회사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3.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미리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이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된 임대보증금은 제외합니다.
5. 보증서 발급 이전 또는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의 해제, 해지 등 종료로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할 임대보증금. 다만,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6. 주채무자가 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임대보증금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위약금, 그 밖의 손해배상채무
7.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지연배상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비용·그 밖의 종속채무
8.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실제 거주하지 않는 명목상 임차인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9. 보증채권자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한 채무
10. 보증채권자가 보증서 발급일 이후 납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보증서에 적힌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하여 알린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임대보증금
11.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12.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게 납부한 임대보증금
13.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 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 제공,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 및 상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계약금을 빌려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사유로 납부한 임대보증금
15. 주채무자가 책임질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6. 그 밖에 보증채권자가 책임질 사유 또는 권리행사를 게을리하여 주채무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나 그로 인하여 생긴 손해

② 보증회사가 제1조 제2호에 따라 임대이행을 할 경우 보증채권자는 잔여 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제10호 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중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너스옵션 부위】 마감재공사 등을 수분양자가 시공하는 조건으로 분양가를 사전에 할인받고 수분양자가 자기 책임하에 시공한 공사부위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② "보증사고일"이란 보증회사가 제1항의 사유로 보증채권자에게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 사업포기 등 관련 문서 접수일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 청구 접수일

■ **청약·당첨·입주·관리 등**

- 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거한 부동산투자회사로서 계약은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체결하게 됩니다.
- 사업주체인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이 주택을 리츠의 자산보관기관인 엔에이치투자증권(주)에 수탁하였습니다.
- 이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부정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주택법」제101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5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취지를 고려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조사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임차인이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홍보관 및 당사 홈페이지(gh2.lynn.co.kr)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화상담, 홍보관 방문고객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임차인 모집공고 및 관련법령 등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계약조건 및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홍보관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홍보관, 평면도, 배치도 등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임대사업자, 임대관리회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각종 통지 등은 임대사업자가 위탁한 주택임대관리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소, 연락처, 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등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통지 불이행으로 인하여 각종 통지서 등이 미도달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임대보증금의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입주 잔금 등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 전 임대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납입한 **계약금 중 200만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계약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계약금 일체가 위약금으로 공제됩니다.), 납부한 보증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퇴거 시 원상복구 완료 여부 등에 대하여 권한있는 제3자에 의한 검증이 필요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오백만원)을 유보금으로 우선공제 할 수 있고, 원상복구비용(임차인과실 분), 퇴실 후 세대청소 및 사용료 등 정산 후 1개월 내에 반환됩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업주체가 지정한 양식으로 퇴거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임차인 모집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인수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인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임대의무기간 10년 경과 후 본 공동주택의 매각 또는 임대기간 연장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시점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시공 상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선행공사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 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주택홍보관,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임대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임대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 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지구단위계획 사업주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CG 및 카탈로그 등 홍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경산 하양지구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인근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경산 하양지구 개발사업 준공완료 시까지 공사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 당해 구역에 개발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의 근린상업용지, 공동주택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 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하우스 등 주위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 될 수 있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제시공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임차인 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체육관, 주민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고 도로, 철도,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주택홍보관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에어클린 시스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분양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경산 하양지구 인근 택지 공사로 인해 공사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일부 축사 등의 존치로 인해 가축 관련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현장을 방문하시어 생활의 불편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람.
- 인근 군부대의 사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지구외의 경산 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및 주변상황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개통일정,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인근의 유해시설(철탑, 묘지, 축사 등) 위치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단지

1) 공통사항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램프 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단, 코로나바이러스 방지를 위해 주택홍보관 관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주택홍보관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태양광발전설비,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소방용 고가수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 최상층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장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승인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 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주택홍보관에 표현된 CG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출입구는 단지 남측 및 동측에 위치하며 도로의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인접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람.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주택홍보관에서 확인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 주변 휀룸,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의 위치를 확인 바라며,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 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가 외벽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내 503동 옥상, 지상, 지하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도서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이동통신 중계장치의 경우 입주 이후 관리사무소, 입대위 결정을 통해 설치함.)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171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 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에는 해당 시설의 실외기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동의 필로티 옆, 상층부 세대는 필로티에 설치된 시설물 등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문주는 남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며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내 지하PIT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집수정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에는 세대창고가 설치되어있으며, 세대창고는 추후 별도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창고에 보관하는 물품이 향후 결로, 부식, 곰팡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진행하지 않으니, 고려하시어 보관물품을 선정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상부 옥상층에는 옥상조경이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공간과 인접한 세대에서는 해당구간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남측에는 21M도로, 북서측에는 20M도로, 동측에는 18M, 8M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해당 도로로 인해 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빛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출입구는 단지 남측 501동, 505동 사이에 주출입구, 단지 동측 504동 전면에 부출입구가 위치하며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주차장 인근 세대의 경우 차량 통행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단지 북측에 경산지식산업지구 연결도로가 공사중으로 향후 일부 구간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고, 도로완공이후 소음 등에 노출될 수 있음.
- 단지 북측에 있는 명곡지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므로 단지와 직접적인 연결로의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없음.

2) 주차장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단차로 인해 501, 502, 505동은 지하주차장 1개층, 503, 504동은 지하주차장 2개층으로 지하주차장 계획이 동별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훤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및 내부통행로 유효높이는 지하1층 2.3m, 지하2층 2.7m로 설계되었으며 이외구간(차량주차구간(2.1m이상) 등)은 높이가 다름.
-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3)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임대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은 임대 관리 업체를 통한 관리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작은도서관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음.
- 일부동의 1층 및 지하층, 최상층에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카페 린의 경우 추후 임차인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운영할 예정임.

4)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사업주체에서 운영·관리할 예정으로 일반분양 대상이 아님.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은 해당시설 입점자(입실자)가 관리함.
-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5) 공용홀

- PD, EPS, TPS실 등 내측 조적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
- PD, EPS, TPS실 등은 철판으로 시공되며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미장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홀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6) 동별 유의사항

501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라인 1층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단지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측 주차구역, 정차대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측, 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후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 5호라인 측벽에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호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있는 공원 이용객으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502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후면에 주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차량 소음 및 전조등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1,2,3호 라인 후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라인 측벽,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호라인 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중앙광장 및 연못이 설치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계절별 해충, 냄새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있는 공원 이용객으로 인해 냄새,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음

503동 – 3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3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후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인접세대는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측에 광장 및 어린이 놀이터가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서측에 운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4,5호 전면에 생활폐기물 저장소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측에 도로가 있어,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호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4호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5호라인 전면,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504동 – 5호라인 1,2층이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음.
– 5호라인 필로티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하부에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외부계단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1호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2호 동출입구 부분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5호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남측에 주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주차구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1호라인 후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5호라인 측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입주민에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쪽에 단지출입구, 주차장 진입로가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505동 – 1호라인 1층 및 데크층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서측에 동출입구, 주차장 진입로 및 주차구획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일부세대는 차량 소음 및 전조등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쪽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로인해 해당 저층부세대는 냄새,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분진, 진동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데크층 셰어형 단위세대의 경우 입주민 및 방문객에 이동에 의한 생활불편이 야기될 수 있음.
– 1,2호 라인 전, 후면에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며, 인접세대는 입주민에 이용에 따른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택형 79E, 79F , 79G , 79H 복층형 구조로 데크층, 1층 호(라인)이 다른 층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동측에 근린생활시설 및 8M도로가 위치하여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1호라인 측벽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호라인 후면에 D.A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냄새,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7) 어린이집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될 예정임.(**단, 관할 지자체의 의견 및 지역내 어린이집 공급 여건에 따라 국공립이집의 설치 운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으로 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관청인 경산시와 체결할 예정임.(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산시에서 신청하는 위탁운영자(원장)에게 인건비, 승강기유지비, 용역비 등 공동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되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의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교육시설

- 초등학생은 지구 내 하주초, 중학생은 하양중학구내 배치, 고등학생은 관내로 배치 될 예정이나 하양지구 내 학교설립이 확정되지 않아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 당해 지구의 학교 등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 및 학교수용계획은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3. 단위세대

1) 공통사항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주택홍보관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정,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욕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택형의 기본 천정고는 1~3층 2.5m, 4층~최상층 2.3m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안방 전면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에 따른 소음들이 생길 수 있으며 1층, 최하층(필로티세대)세대, 복층형타입(79E,F,G,H) 및 79C,D타입 중 복층형 직상위치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와 하향식 피난구는 동일한 공간에 설치되며,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람.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주민공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 침실에 각 1개소 매립 설치됨.(단, 알파룸은 냉매배관 미설치)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욕실 및 보조주방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목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 소화기 설치되어 화재 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택홍보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빨래건조대스위치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타입별로 위치나 방향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사전 확인하기 바람.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임.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주택홍보관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구현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당사에 적용된 공기질관리통합시스템, 미세먼지 센터 알림시스템(부대시설) 이용 시 통화료 이외의 별도의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미세먼지적용 아이템은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9D(셰어형)타입은 사이버모델하우스에 구현된 지급가구 및 지급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설치위치가 실제와 상이할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복층세대 일부(79H)의 경우 부대시설(창업지원센터)와 경계벽을 맞닿아 있어 일부 소음 등이 발생할수 있음.
-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에서의 소음이 외부로 전달될 수 있음.

2) 창호
- 외부창호 프레임의 색상은 외측은 백색, 내측은 시트지(주택형별 상이)가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 색상이 변경됨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실외기실 루버창은 외부도장과 연계해서 일부세대에서 색상이 다를 수 있음.
- 79D(셰어형)타입의 실외기실 루버창(3~10층)은 대피 등의 목적으로 개폐형으로 설치됨.

3) 발코니확장
- 본 아파트는 발코니확장 및 외부샷시가 설치가 완료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시공사가 공사하여 제공함.
- 사이버모델하우스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구현함.
- 발코니 확장부위는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비확장부위인 안방발코니 내측은 22mm복층유리 이중창, 외측은 22mm로이복층유리 단창으로 설치되고, 주방발코니 외측은 22mm일면로이복층유리 이중창, 내측(발코니2(보조주방))은 목문(ABS수지)이 설치예정임(설치부위에 따라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발코니 샷시는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실 시공 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및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는 비 난방구역으로 발코니에 설치된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함.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소방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외기/하향식 피난구의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에는 소방피난이동공간으로 계획된 용도 외의 사용이 불가하며, 피난동선의 방해가 되는 적재공간으로 사용이 불가함.
- 실외기/하향식 피난구의 하향식 피난구는 바닥에 햇치커버와 피난용 사다리가 일치되어 설치 됨.

4. 분양홍보물 관련(사이버모델하우스, 홈페이지, 인쇄물 등)

-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사이버모델하우스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석재 등 천연소재 자재의 경우 천연재료의 특성상 사이버모델하우스와 일부 상이한 생상과 무늬가 설치 될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84A, 84B, 79D타입 천정고는 2.3m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모델하우스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사이버모델하우스 미구현세대의 경우 주택홍보관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주택홍보관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주민 카페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샘플하우스를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5. 계약관련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 질 수 있으며, 임대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분양대행업체, 사전점검관련업체, 주택임대관리업체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 **친환경 주택 성능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적용여부
건축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성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마목)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조명설치(다목)	적용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아래와 같이 표시함.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경산하양지구 A6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인증번호	2021-132
건축주	주식회사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준공(예정)일	2022.03.02	유효기간	2021.04.21.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양지리 (경산하양지구 A6BL)	인증 등급	
층수	지상35층, 지하2층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
연면적	117,630.7376 ㎡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19.09.01))
건축물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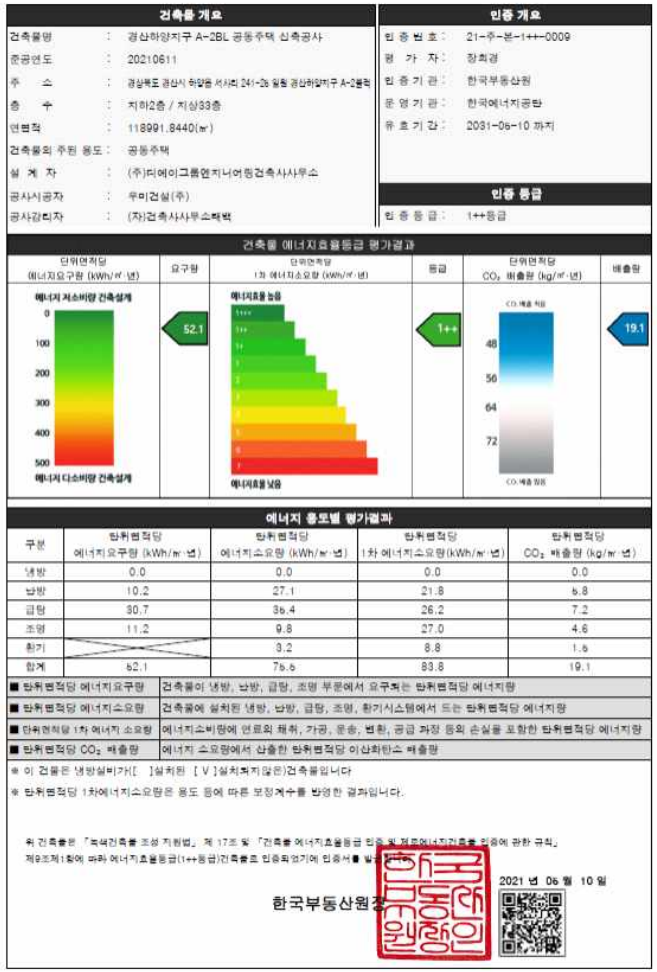
종합등급 ★ ★ ☆ ☆

2021년 04월 21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경산하양지구 A-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증번호	21-주-본-1++-0009
준공연도	20210611	평가자	장희경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리 241-2a 일원 경산하양지구 A-2블럭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층수	지하2층 / 지상33층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118991.8440(㎡)	유효기간	2021-06-10 까지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계자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공사시공자	우미건설(주)		
공사감리자	(자)건축사사무소백백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0.2	27.1	21.8	5.8
급탕	30.7	36.4	26.2	7.2
조명	11.2	9.8	27.0	4.6
환기		3.2	8.8	1.6
합계	52.1	76.6	83.8	19.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 년 06 월 10 일

한국부동산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건축감리	㈜해밀씨엠	₩2,116,658,500	
소방/통신감리	(유)이에프	₩443,410,000	
전기감리	㈜삼우공간건축사사무소	₩496,044,12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시공회사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회사	비고
㈜우미대한제23호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10111-6842656)	우미건설(주) (205211-0001385)	대한토지신탁(주) (110111-1492513)	엔에이치투자증권(주) (110111-0098130)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 **gh2.lynn.co.kr**
■ **주택홍보관 위치**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서사도리5로 15, 101호
■ **임대 및 계약관련 문의** : ☎ 053-857-7870